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남 창 진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2017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이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‘3종시설물’로 편입되어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.

또한 2024년 12월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 ‘1종시설물’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

하인 ‘2·3종시설물’까지 확대하도록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강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‘3종시설물’과 ‘법정의 시설물’을 ‘1종·2종이외시설물’로 묶은 부분에서 ‘3종시설물’을 분리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